### 학생 생활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이 규정은 '함열여자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 교육법 제8조 및 제9조 제1항·제4항의학교규칙기재사항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제4항·제8항에 의거하여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지도를 통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2장 생활지도협의회

#### 제4조【구성】

- 1.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혐의회를 둔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회장, 교감을 부회장으로 하고 인성인권부장을 주무로 한다.
- 3. 회장은 생활지도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를 대신한다.
- **제5조 【교직원의 의무】**본교 교직원은 생활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 또는 교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결정족수】**생활지도협의회는 재적의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생활지도협의회의**】생활지도협의회는 직원회의 시 병행하며, 사안발생 시 생활지도협의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선도위원회】

-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에 생활선도위원회를 둔다.
- 2. 생활선도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교장의 명을 받아 교감이 회의를 진행함 위원은 학생인성 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진로상담으로 두고 학생인권부교사(교내계)을 주무로 한다.
- 3. 생활선도위원회는 생활지도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 4.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5. 교내봉사 이하에 해당되는 사안에 해당되는 사안은 인성인권안전부 교사들만의 생활선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장 학생생활

#### 제1절 교내생활

- **제9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 【자학자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2.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3.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3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제14조【폭력예방】

-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언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 인성인권안전부장, 학생상담부장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 2) 학교나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3) 익산교육지원청에 구두보고 및 사안보고
  -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7) 경찰서 학교폭력전담팀 063-830-0238 학교폭력범죄신고 112 또는117
-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4. 폭력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 학급교체 또는 전학을 명할 수 있다.
- 5.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5조【보행】

- 1. 복도에서는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걷는다.
- 2. 실외에서는 신발을 구겨 신거나 끌고 다니지 않는다.

3. 실내에서는 실내화, 실외에서는 실외화를 자유롭게 착용한다.

#### 제16조【화장실사용】

- 1. 화장실은 깨끗이 사용한다.
- 2.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변기에 이물질을 넣지 않는다.
- 3. 바닥에 침을 뱉지 말고 용변 후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
- 4. 문을 조용히 여닫고 발로 차거나 두드리지 않는다.
- 5. 화장지를 꼭 휴대하고 용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6. 화장실 기물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 제17조【수도사용】

- 1.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틀어 사용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잠근다.
- 2. 학교공공 물건을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는다.(수돗물, 전기 등)

제18조【이성교제】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를 하도록 한다.

- 1.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3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4.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제19조【양성평등 및 보건】

-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동아리활동】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한명 이상 두어야 한다.
-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4. 학생은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21조【여가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권장 한다.
-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3.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 1명씩 지정하여 관리한다.
- 4. 인성인권안전부교사는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확인한다.

5.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제22조 【예의, 용의 사항】용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3. 학교의 행사나 학생 자치회의 활동, 학생회 임원 선거 운동기간에는 완장이나 어깨띠, 흉장 등을 학교의 허락을 얻어 부착하거나 착용할 수 있다.
- 4. 체육시간이나 허용된 시간 이외에 교내에서 운동복이나 사복을 착용할 수 없다.
- 5.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착용한다.
- 6. 교내에서 모자를 가급적 착용하지 않으며, 학교행사, 봉사활동, 준거집단 활동, 질병치료 및 외상으로 인한 상처 보호나 흉터의 가림을 위하여 착용할 수 있다.
- 7.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 8. 여학생은 치마와 동일한 천으로 제작된 바지 착용을 허용한다.
- 9. 등 · 하교 시 용의 복장을 단정히 한다.
- 10. 실내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는 가볍게 목례를 한다.
- 11. 동ㆍ하복, 춘추복 착용 기간과 옷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구분	착용 시기	옷 종류	기타
동복	11월 초순 ~ 4월 초순	▶여: 상의 자켓, 블라우스, 스커트, 베스트 (혹은 니트천), 타이	
하복	5월 중순 ~ 9월 중순	▶여: 블라우스, 스커트	
춘·추복	4월 초순 ~ 5월 중순 9월 중순 ~11월 초순	▶여: 블라우스, 스커트, 베스트(조끼), 타이	

- 12.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부모, 교직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13.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된 복장착용과 두발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용의복장자유허가서를 학생 인권부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 제23조【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1. 학생은 세계관 · 인생관 또는 가치적 ·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2.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4.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5.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6.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7.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소지품 확인】

- 1.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해한 물건이나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다.
- 3. 소지품 확인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4. 소지품 확인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5.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 확인시 여학생은 여교사가 실시한다.

제25조 【조퇴, 외출 등】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제26조【수업】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출결】출결사항, 경조사 출결, 결석의 종류와 처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1. 학교장이 정한 (일과시간표)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2. 등교(조회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3.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제28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 제29조【기타 교내생활】

- 1.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2.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3.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아니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4.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

#### 제2절 바른 이끔이부 운영

- 1. **제30조【목적】**본 규정은 학생회 자치 활동 정신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건전한 교풍을 확립 하기 위하여 바른 이끔이 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2. **제31조【조직】** 바른 이끔이 위원회는 학생회조직 인원의 15%를 정원으로 조직하되, 사정에 따라서정원을 증강할 수 있다.
- 3. 제32조【자격】바른이끔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 4. 제33조 【선발 방법】
- 5. 1. 바른이끔이위원회 지원서를 제출한 자원자 가운데 면접으로 선발한다.
- 6. 2. 면접관은 인성인권안전부교사가 담당하고, 선발된 학생은 바른이끔이위원회 서약서를 제출한다.
- 7. 제34조 【선발시기】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2학기에 선발한다.
- 8. 제35조【부장 선출】바른이끔이위원들이 3명을 추천하면 교직원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9. 제36조【임기】바른이끔이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임명일로부터 학교장 또는 인성인권안전부장이 결정한다.
- 10. 제37조【자격 상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1. 1. 임무에 불성실하여 부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 12. 2. 인성인권안전부장이 활동 내용이나 사안들을 판단하여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13. **제38조 [임무]** 바른이끔이위원은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자치정신을 가지고 다음 임무를 수행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 14. 1. 등 · 하교 도우미
- 15. 2. 용의복장 도우미
- 16. 3. 교내질서 및 풍기 도우미
- 17. 4. 언행 및 정숙 도우미
- 18. 5. 교내 안전 도우미
- 19. 6. 학교행사 시 질서 및 안전도우미
- 20. 7. 기타 교칙위반 사항 도우미
- 21. 제39조【조 편성】바른이끔이 활동은 필요에 따라 조를 편성하여 주단위로 활동한다.
- 22. 제40조【일지 작성】지도일지는 조별 서기가 기록하고 조장이 지도교사에게 제출한다.

#### 제3절 교외생활

- **제41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42조 【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협조하며, 심각할 정도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제4절 정보통신

제43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  $\cdot$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 8. 컴퓨터 사용은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44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2. 교내의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5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휴대폰은 교내에서 소지할 수 있으나,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며 오후 종례시간에 반환받는다. 일과 중 부득이 사용이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 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이를 어겨 교육활동에 방해를 주었을 경우 "스쿨그린"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단,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절차에 의한다)
- 2. 시험시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3. 전자기기는 소지 가능하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스쿨그린"에 의거하여 처리 한다.

#### 제5절 학생회

제46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7조【자치활동의 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

수할 의무가 있다.

- 1.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2. 학교는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4.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학교규정'이라함)의 제 .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5.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 . 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8조【효력정지】학생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4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협의 지원 사항】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2.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학생회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제50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51조【협의 및 지원 사항】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 활동
-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52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3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 회장 1인, 3학년 부회장 1인, 2학년 부회장 1인.
- 2. 각 부의 부장 1인.

제54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2. 학예부 : 학습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 3. 미화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에 관한 사항
- 4.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5. 바른이끔이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6. 봉사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제55조【학생회장 . 부회장 직무, 임원선출 및 자격상실】

- 1.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임원선출은 본교 학생회 회칙(규정)에 의거한다.
- 2.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 관장한다.
- 3.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학생회 임원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 하며 각 부서의 장은 학생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한다.
- 2) 각 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 4. 자격상실 : 학생회의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교직원회의 및 학생회대의원회의 의 의결을 거쳐 자격상실 여부를 판단하고, 임원 포기원을 제출받아 학생회 임원 자격상실을 결정한다.

제56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1. 구성
  - 1)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 2. 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예산심의
  - 3)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처리
  - 4) 학생회칙의 개정에 대한 심의
  - 5) 기타 필요한 사항
- 3. 회의
  -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4.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5.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 제57조【집행위원회】

-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2. 기능
  -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2) 사업계획
  -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4) 기타 중요한 의안
- 제58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 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9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0조【회의】집행위원회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인성인권안전부 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제4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61조【안전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행한다.

- 1. 실험 .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물놀이 . 등산 .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62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 제63조【교외생활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 제64조【교내생활지도】교내 학생생활지도의 방안으로 "그린마일리지"을 시행하여 인권존중의 학생지도 방법이 적용되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세부 규정은 별도("그린마일리지(상벌점.)"규정 참조)로 정하다.
- 제65조【체벌(體罰)금지】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체벌(體罰)을 전면 금지하며 대화와 상담, 자율과 책임에 의한 생활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66조【대체 벌 기준】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체벌을 대체 할 학교별 창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세부 규정은 별도("그린마일리지"규정 참조)로 정한다.
  - 1. 교사가 행하는 학생들에 대한 모든 체벌행동을 금한다.
    - 1)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금지
    - 2)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3) 학생비하 . 모욕하는 언어폭력(신체, 외모, 가정환경, 성적 등) 금지
    - 4) 반복적 .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처벌
  - 2. 교사가 대체 벌을 줄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 1)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순차적으로 지도한다.
    - 2) 지도내용을 학생 . 보호자에게 사전에 인지시키다.
    - 3) 학생 지도 후 위로 . 격려 등 학생과의 인간적 신뢰를 구축한다.
    - 4) 모든 조치는 학생의 정상적인 회복과 학교생활태도의 개선을 목표로 진행한다.

제67조【대체 벌 대상】대체 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 1.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 . 정신적 . 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 4.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 5. "그린마일리지"규정을 일정 한도로 위반했을 경우

#### 제 68조【훈계·교육 등의 교육적 조치】

- 1.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 . 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5) 훼손 시설 .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7) 기타,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3.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선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9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 .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2절 수상

제70조【종류】본교 학생에게 별도의 규정(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해 시상한다.

제71조【시기】수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한다.

제72조【외부로부터의 수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규정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한다.

#### 제5장 징계

- 제73조【징계원칙】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2. 학생징계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4.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5.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6.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공고문 게시 금지)

#### 제74조【징계의 심의】

- 1.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 7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
- 2. 학교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재 처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또는 교칙에 따라 가능하다.

제75조【재심의 부의】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생활선도협의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6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
- 2. 사회봉사 : 3 ~ 10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3 ~ 10시간이내 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4. 출석정지 : 기간은 학교장이 정하고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77조【징계의 방법】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당당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 . 교구정비, 학교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시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회	
<u>08:10 ~ 08:50</u>	학교 내 봉사 활동						
<u>12:50 ~ 13:30</u>	학교 내 봉사 활동						
<u>종례 후 ~ 17:30</u> 학교 내 봉사 활동							
※활동시간에 늦을 경우 봉사 기간 외 추가 실시							

- 2.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 . 지정 .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 . 치료를 받아야 한다.
    -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4.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 감독이 어려울 경우 본교학교 위 클레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학급교체"는 선택 교과를 고려해야 하고, "전학"은 해당 학생의 통학거리를 고 려한다.
  - 6. "학교 내의 봉사"와 "사회봉사"는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78조【징계 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
- 3. 교재 . 교구 정비
-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5.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6. 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 마약 . 환각제 . 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 .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 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7. 출석정지 : 생활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학교장이 정하고 출석정지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제79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생활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80조【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 1. 생활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2. 생활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81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82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제83조【장계의 기준】장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본교"그린마일리지"운영계획("그린마일리지"장계기준 부록 1, 2, 3)에 준한다.

#### 제5장 개정방법

- 제84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위원회에 학생회 대표, 학부모 대표, 교직원 대표로 구성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 1.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생활 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 범위)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제정 ·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4. (위원회 운영)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위원회」(이하 '위원 회')를 둔다.
- 가.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 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고 간사 1인은 학생인권부장, 서기는 학생회 업무담당 교사로 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라.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마.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5.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6.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
- 7. (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8.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를 통해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9.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제6장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운영

제85조【운영원칙】벌점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들의 준법정신,질서 의식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 2. 카드의 사용 및 남발보다는 훈육, 훈계로 학생지도를 유도한다.
- 3. 상·벌점 모두 20점 이상시 단계별로 누적되는 점수에 따라 자동으로 담임교사와 학부모, 학생에게 SMS 문자전송으로 통지한다.
- 4. 벌점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학생은 단계별 선도교육을 실시한다.
- 5. 성실하게 선도교육을 받은 학생은 누계점수를 차감한다.
- 6. 1개월마다 누계 점수를 산출하여 과벌점 학생을 지도한다.

제86조【담당기구】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선도위원회를 활용한다.

- 제87조【기능】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되며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1. 학생벌점 관련 사안 및 학생사안
- 2. 기타 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등

#### 제88조【상·벌점의 활용】

- 1. 칭찬점수가 -20점 이상인 우수학생은 학기말에 학교장 표창하며, 벌점이 있을 경우 벌점을 공제할 있다.(단, 일단 수상한 상의 점수는 누계에서 제외한다)
- 2. 교내 선행상, 기본생활 우수상은 학급에서 상점이 가장 많은 학생 순으로 추천을 권장함.

#### 제89조【기본방향】벌점제 운영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 월 7일후에 누계점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 2. 입교 인원을 고려하여 수준별, 학년별로 편성한다.
- 3. 학생부가 주관하며 교내봉사 지도는 담임교사,학생부교사,환경부교사가담당한다
- 4. 상·벌점 담당교사는 과벌점 학생 학부모에게 내교통지서 발송 및 SMS문자 서비스로 이를 통보하여 가 정과의 연계상담을 지도를 실시한다.
- 5. 지도 단계별 지도 대상 및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도단계	누계점수	지도교사	지도내용
1단계	20	담임교사	담임상담, 반성문, 교내봉사 4시간
2단계	40	담임교사	담임 학부모 상담, 반성문, 교내봉사 8시간
3단계	60	담임교사, 학생부교사	담임, 학생부교사 학부모 상담, 반성문, 교내봉사 12시간
4단계	80	담임교사, 학생부교사	담임, 학생부교사 학부모 상담, 반성문, 교내봉사 16시간 또는 사회봉사 4~6일

\*교내 봉사 1시간 ->5점 삭감,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도 희망자에 한해 교내 봉사 허용 \*환경 보호 정상 등반 인증샷 -> 봉사 4시간 인정(2단계부터 적용)

제20조【기준】상·벌점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징 계 기 준

### 〈부록1〉

_,,	=1		징			계	
구분	항	행 위 내 용	주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 정지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0 1	-	<u> </u>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예절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6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8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					
		나 대여한 학생					
	9	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					
	10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11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준법	12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13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5	경찰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16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7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8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9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20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수업	23	수업을 거부한 학생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구현	24	고시 중 구경영귀를 왔기다 중요한 약경 시험을 거부한 학생					
	25	여러글 시구한 특징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26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27	아침 등교 시 지각,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한 학생					
	28	무단결석,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29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7 -71	30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근태	31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5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32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2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무단결석 기간이 수업일수 1/3 을 초과한 학생(의무교육대상자 제외).					
	33	의무교육대상자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					
		한 자에 대하여는 유예로 한다.					
-		<u> </u>					

# 징 계 기 준

<부록2>

				징		<u></u> 계	
구분	항	행 위 내 용	주의	교 내 봉 사	사 회 봉 사	빠면어	출서저이지
	3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약물	35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36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37	타인을 구타하여 흉기를 소지한 학생					
	38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표려 .	39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폭력 :	40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도, 가담한 학생					
	41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42	이유 없이 상, 하급생간에 폭력을 행한 학생					
	43	도박을 한 학생					
	44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45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퇴폐	46	불량서적(음란서적)을 탐독한 학생					
행위	47	불량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48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9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50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금품	51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ㅁ풉	52	금품을 강탈한 학생					
	53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54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집단	5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56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57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58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기타	59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14	60	징계 기준외의 것도 선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붙임1. 상·벌점 세부 기준안

영역	번호	상점 내용	점수
	1	단체 및 행사 활동에 솔선수범함	2
	2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함(1개월)	2
	3	학급 비품 관리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함(1개월)	2
-1 -1 -1 -1	4	학급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3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5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3
07120	6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등.하교 도우미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3
	7	학급을 위한 봉사 활동(월 3명 이내)	3
	8	학교 행사시 봉사활동	3
	9	학교 전체를 위한 봉사활동	3
	10	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2
	11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훼손 신고	2
준법신고	12	흡연 또는 음주 행위 신고	2
활동 (비밀보장)	13	학생 안전사고 신고	3
	14	학교폭력 관련 신고	5
	15	분실물(지갑, 현금, 귀중품 등) 습득 신고	3
	16	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해 선행.모범이 제보된 학생	7
예절	17	언론 매체에 선행.모범이 보도됨	10
및 공중도덕	18	인사예절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2
	19	고운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2
출결	20	용의 복장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2
기타	21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 참여	5

영역	번호	벌점 내용	점수
	1	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 조퇴, 무단외출	2
	2	무단 결석(1회)	4
	3	교내 행사 무단 불참	3
	4	교외 단체 활동 또는 교외 행사 무단 불참	2
준법	5	청소 활동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참여	2
	6	월담(출입문을 사용하지 않고 담 등을 넘어 학교 출입함)	3
	7	출입 금지 장소 출입	5
	8	수업시간 전자기기(mp3, 휴대폰, 게임기기 등) 무단 사용	4
	9	교내에서 사행성 오락(카드, 화투 등)	2
	10	음란물 반입.탐독.시청	3
= 01	11	교내에서 술, 담배 소지	3
흡연 및 음주	12	교내.외 단체 활동 시 술, 담배 반입	3
<u>音</u> 子	13	교내.외에서 음주 또는 흡연	5
	14	교내에서 껌, 쓰레기를 함부로 뱉거나 버림	3
	15	실내에서 실외화, 등·하교 시 실내화를 착용	3
예절 미	16	교내에서 단순한 다툼(싸움)이나 소란(공놀이, 말 타기 놀이 등)을 유발함	2
및 공중도덕	17	급우 또는 선후배에게 심한 욕설	3
	18	교사 또는 어른에게 불손한 언행	4~7
	19	교내에서 비품, 공공기물 훼손 또는 파손	5
	20	두발 또는 용의규정 위반(파마, 염색, 귀걸이, 피어싱, 복장변형 등)(기간 내 복귀가 안 됐을 시 추가)	3
	21	복장 규정 위반 (블라우스, 치마, 타이, 등·하교 시 교복착용 안함, 신 등)	2
두발, 용의 복장	22	교내에서 명찰을 착용하지 않음	1
	23	아침 자율학습시간 지각	2
	24	고대기, 색조화장품, 매니큐어를 교내에서 소지	2
	25	색조화장, 변형눈썹, 매니큐어, 고대기 사용한 머리 형태	2
학습활동	26	수업시간 중 음식물 섭취(껌, 과자 등)	2

## 2018학년도 용의복장 지도규정 함열여중 학생생활인권규정 제 14조 4항

구	분	지켜야 할 사항	해서는 안 될 사항			
※ 두발	형	-학생두발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함. -긴 머리는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단정하게 묶는다. -스트레이트와 안쪽 웨이브 모양은 허용.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고, 화학제품의 나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마, 염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장식	-핀, 머리띠	-동물 모양이 들어 있는 것을 착용 시 경고			
11uL	형태	-검정색 계통의 단화(운동화) -짙은 갈색이나 황토색 피혁신발(구두)	-허용된 형태이외의 모든 숙녀용 구두, 실내화, 슬리퍼, 샌들, 부츠 등을 착용 시 경고			
신발	착용	-등하교시 구부려 신지 않는다.	-슬리퍼를 신고 등하교 시 겨울철 실내화 중 털이 많고 대형 동물형태의 것을 착용 시			
양말	색깔	-흰색, 검정색 계통의 양말 -검정색 계통의 스타킹(무늬가 없고, 살이 비치는 검정색, 베이지 색, 커피색 허용)	-빨강, 파랑, 노랑 등 원색의 양말, 레이스 장식, 숙녀용 스타킹, 화투무늬 양말			
	착용	-여학생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다.				
가	방	-학생용 가방	-빈 가방(화장품,거울,만화,사복,노트1-2권 등 만 들어 있는 경우)소지 경우			
치	마	-무릎 뒤에서 위로 10cm까지	-치마 밑 체육복 착용			
안	경	-은색, 검정색, 금색 테의 시력보호를 위한 무색 렌즈의 보통안경	-치장을 위한 모든 안경 (써클렌즈, 유색렌즈)			
눈	썹	-눈썹 정리	-눈썹 그리기, 문신(영구, 반영구) 금지			
손	발	-손발톱은 짧게 자르고 치장하지 않도록 함.	-컬러 매니큐어를 칠 한 경우 (원상복구 할 때 까지 지도) 긴 손톱(지속적인 지도 관찰)			
화	장	-피부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무색 화장 (스킨,로션, 크림).썬크림 틴트 허용 (색 조절하여 연하게 바름)	-쌍꺼풀 수술 등 피부변형 색조화장 (BB크림, 파운데이션)아이 메이크업 금지			
장 선	· 구	-원래의 색깔인 반지(링 반지) -귀걸이는 한 쌍만 착용을 허용(귀에 딱 달라붙는 것을 착용) -시계 및 팔찌 착용 가능 -가족끼리 맞춘 반지, 종교 반지 가능 -목걸이 착용 가능	-무늬가 있고 보석이 장식된 반지, 목걸이, 팔찌. -번쩍거리거나 숙녀용인 귀걸이, 코걸이, 고가의 목걸이와 반지			
바	지	교복 스커트 원단으로 착용하는 것 허용				
체육	-체육복과 교복 혼착 금지 -개인 체육복, 맨투맨 등 착용 금지 -사이즈 문제로 학교 반팔 체육복을 착용할 수 없을 시 단정한 반팔 셔츠 허용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 가능(혼착은 안되며, 하교 시 교복입고 하교) -스포츠 동아리를 하는 날에는 체육복 착용 후 하교 하는 것을 허용 -스포츠 동아리 시간에 체육복 입기					
전자	7]7]	-전자기기 사용 금지 -행사 시 휴대폰을 걷지 않음(음악경연대회 시에는 걷도록 함) -휴대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걷음(각 반 휴대폰 관리자 선출)				
7]	타 -외투 색깔 제한 없음 -교복 마이 또는 가디건 입기(둘 중에 하나는 꼭 입어야 함)					